|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1. **총칙**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평한 경쟁을 격려 및 보호하며 부정당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3.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의지,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및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부정당경쟁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지칭한다.이 법에서 경영자라 함은, 상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이하에서 상품이라 함은 서비스도 포함한다)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을 지칭한다.1. 각 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반부정당경쟁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중대한 반부정당경쟁 정책을 연구•결정하며 시장질서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이슈를 조율하고 처리한다.1.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공상행정관리 직책 담당부서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기타 부서가 조사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국가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모든 조직과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부정당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하여서는 아니된다.업계조직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회원의 적법한 경쟁을 유도•규율하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1. **부정당경쟁행위**
2. 경영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혼동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4.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역명 등 포함)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5.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사이트 명칭, 웹페이지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6.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거나 타인과 특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기타 혼동행위
7. 경영자는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뇌물공여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개인을 회뢰(賄賂)하여서는 아니된다.
8.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
9. 거래 상대방의 위탁으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또는 개인
10.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 활동을 함에 있어 명시적인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할인을 해주거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할인을 해주거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함에 있어 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가격할인을 받거나 커미션을 수취하는 경영자도 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경영자 임직원의 뇌물공여 행위는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경영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임직원의 행위가 경영자의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 확보와는 무관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경영자는 그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황, 구매자 평가, 수상 경력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는 거래 조작 등 행위를 통하여 기타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는데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절도, 뇌물공여, 사기, 협박, 전자침입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확보하는 행위
3. 위의 수단으로 확보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4. 비밀유지 의무 또는 권리자의 상업비밀 유지 요구에 반하여 그가 확보한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5. 비밀유지 의무 또는 권리자의 상업비밀 유지 요구에 반하여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확보,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교사, 유인, 방조하는 행위

경영자를 제외한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전항의 위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자의 임직원, 전(前) 임직원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본 조 제1항의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업비밀을 확보,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이 법에서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지칭한다.1. 경영자는 경품부판매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2. 상(賞)의 유형, 당첨 경품 수령조건, 당첨금 금액 또는 경품 등 경품부판매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당첨 경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허위 경품 행사 또는 의도적으로 내정자가 당첨되게 하는 사기적인 방식으로 경품부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4. 추첨식 경품부판매의 최고상 금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영자는 허위 정보 또는 오도적 정보를 조작, 전파함으로써 경쟁상대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 평판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이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타 경영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원래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연결하는 행위
2.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삭제하도록 이용자를 오도, 기만, 강요하는 행위
3. 악의적으로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기타 행위
5.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6. 감독검사부서는 부정당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경영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개인을 신문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피조사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관련 계약서, 장부, 증빙, 문서, 기록, 업무서신과 기타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10.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관련 재물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11.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연루된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된 시(市) 급 이상 인민정부의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독검사부서는 부정당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시에 조사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1. 감독검사부서가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진행 시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조직, 개인은 관련 자료와 상황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감독검사부서와 그의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감독검사부서에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제보 접수용 전화번호, 우체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보인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법률책임**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영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영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배상액수는 그가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손실액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였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상기 방식에 따라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경영자가 이 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손실액, 권리침해로 인해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침해 행위의 경중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1. 경영자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혼동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상품을 몰수한다.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경영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엽업집조를 취소한다.

경영자가 등기한 기업명칭이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지체없이 명칭변경 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존 기업등기기관은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신한다.1. 경영자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반하여 타인을 회뢰(賄賂)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2. 경영자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반하여 그의 상품에 대한 허위적 상업홍보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거나 거래 조작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가 허위적 상업홍보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는데 방조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다.

경영자의 이 법 제8조 규정 위반이 허위광고 발표에 해당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1. 경영자 및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경영자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여 경품부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경영자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반하여 경쟁상대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 평판을 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 및 영향 제거를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경영자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반하여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불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5.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부정당경쟁에 종사한 경영자가 주동적으로 불법행위의 위해(危害) 결과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등 법정(法定)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경하게 행정처벌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한다.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이 이뤄짐으로써 위해(危害)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6. 경영자가 이 방벙의 규정에 반하여 부정당경쟁에 종사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7.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이 발생하였고 그의 재산으로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민사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8. 이 법에 따른 감독검사부서의 직책 이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조직에게는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릴 수 있다.
9. 감독검사부서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감독검사부서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1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2. 상업비밀 침해 사건 민사심판 절차에서 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시하여 그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하였고 상업비밀을 침해당하였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이 이 법에 규정한 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시하여 상업비밀을 침해당하였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그가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권리침해 혐의자에게 상업비밀 확보 채널 또는 기회가 있음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가 해당 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권리침해 혐의자가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였거나 누설, 사용할 리스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3. 권리침해 혐의자가 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4. **부칙**
5.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1993年9月2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通过；2017年11月4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修订；根据2019年4月23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等八部法律的决定》修正）**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鼓励和保护公平竞争，制止不正当竞争行为，保护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法。　　**第二条**　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原则，遵守法律和商业道德。　　本法所称的不正当竞争行为，是指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违反本法规定，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的合法权益的行为。　　本法所称的经营者，是指从事商品生产、经营或者提供服务（以下所称商品包括服务）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　　**第三条**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制止不正当竞争行为，为公平竞争创造良好的环境和条件。　　国务院建立反不正当竞争工作协调机制，研究决定反不正当竞争重大政策，协调处理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问题。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部门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查处；法律、行政法规规定由其他部门查处的，依照其规定。　　**第五条**　国家鼓励、支持和保护一切组织和个人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社会监督。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支持、包庇不正当竞争行为。　　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规范会员依法竞争，维护市场竞争秩序。**第二章　不正当竞争行为**　　**第六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混淆行为，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　　（一）擅自使用与他人有一定影响的商品名称、包装、装潢等相同或者近似的标识；　　（二）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企业名称（包括简称、字号等）、社会组织名称（包括简称等）、姓名（包括笔名、艺名、译名等）；　　（三）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域名主体部分、网站名称、网页等；　　（四）其他足以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的混淆行为。　　**第七条**　经营者不得采用财物或者其他手段贿赂下列单位或者个人，以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　　（一）交易相对方的工作人员；　　（二）受交易相对方委托办理相关事务的单位或者个人；　　（三）利用职权或者影响力影响交易的单位或者个人。　　经营者在交易活动中，可以以明示方式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或者向中间人支付佣金。经营者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向中间人支付佣金的，应当如实入账。接受折扣、佣金的经营者也应当如实入账。　　经营者的工作人员进行贿赂的，应当认定为经营者的行为；但是，经营者有证据证明该工作人员的行为与为经营者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无关的除外。　　**第八条**　经营者不得对其商品的性能、功能、质量、销售状况、用户评价、曾获荣誉等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经营者不得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　　**第九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侵犯商业秘密的行为：　　（一）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　　（三）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　　（四）教唆、引诱、帮助他人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权利人的商业秘密。　　经营者以外的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实施前款所列违法行为的，视为侵犯商业秘密。　　第三人明知或者应知商业秘密权利人的员工、前员工或者其他单位、个人实施本条第一款所列违法行为，仍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视为侵犯商业秘密。　　本法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　　**第十条**　经营者进行有奖销售不得存在下列情形：　　（一）所设奖的种类、兑奖条件、奖金金额或者奖品等有奖销售信息不明确，影响兑奖；　　（二）采用谎称有奖或者故意让内定人员中奖的欺骗方式进行有奖销售；　　（三）抽奖式的有奖销售，最高奖的金额超过五万元。　　**第十一条**　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争对手的商业信誉、商品声誉。　**第十二条**　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动，应当遵守本法的各项规定。　　经营者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下列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　　（一）未经其他经营者同意，在其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中，插入链接、强制进行目标跳转；　　（二）误导、欺骗、强迫用户修改、关闭、卸载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　　（三）恶意对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实施不兼容；　　（四）其他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第三章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调查**　　**第十三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　　（一）进入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场所进行检查；　　（二）询问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要求其说明有关情况或者提供与被调查行为有关的其他资料；　　（三）查询、复制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协议、账簿、单据、文件、记录、业务函电和其他资料；　　（四）查封、扣押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财物；　　（五）查询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者的银行账户。　　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采取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措施，应当向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应当将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　　**第十四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第十五条**　监督检查部门及其工作人员对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十六条**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监督检查部门举报，监督检查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　　监督检查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监督检查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第四章　法律责任**　　**第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经营者的合法权益受到不正当竞争行为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因不正当竞争行为受到损害的经营者的赔偿数额，按照其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计算的，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经营者恶意实施侵犯商业秘密行为，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还应当包括经营者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第九条规定，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权利人五百万元以下的赔偿。　**第十八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规定实施混淆行为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商品。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经营者登记的企业名称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应当及时办理名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原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码代替其名称。　　**第十九条**　经营者违反本法第七条规定贿赂他人的，由监督检查部门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二十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对其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或者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吊销营业执照。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属于发布虚假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处罚。　　**第二十一条**　经营者以及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违反本法第九条规定侵犯商业秘密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二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条规定进行有奖销售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三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一条规定损害竞争对手商业信誉、商品声誉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消除影响，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四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五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有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等法定情形的，依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　　**第二十六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受到行政处罚的，由监督检查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公示。　　**第二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责任、行政责任和刑事责任，其财产不足以支付的，优先用于承担民事责任。　　**第二十八条**　妨害监督检查部门依照本法履行职责，拒绝、阻碍调查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对个人可以处五千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二十九条**　当事人对监督检查部门作出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三十条**　监督检查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　　**第三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二条**　在侵犯商业秘密的民事审判程序中，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证明其已经对所主张的商业秘密采取保密措施，且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涉嫌侵权人应当证明权利人所主张的商业秘密不属于本法规定的商业秘密。　　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且提供以下证据之一的，涉嫌侵权人应当证明其不存在侵犯商业秘密的行为：　　（一）有证据表明涉嫌侵权人有渠道或者机会获取商业秘密，且其使用的信息与该商业秘密实质上相同；　　（二）有证据表明商业秘密已经被涉嫌侵权人披露、使用或者有被披露、使用的风险；　　（三）有其他证据表明商业秘密被涉嫌侵权人侵犯。**第五章　附　则**　　**第三十三条**　本法自2018年1月1日起施行。 |